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00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77,055원 및 그 중 76,917,475원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21.까지, 피고 B은 2020. 4. 17.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12. 28. 접수 제2074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9%, 지연배상금을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120,000,000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6.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1%, 지연배상금을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앞서 본 2014. 4. 7.자 대출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60,000,000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9. 2.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9. 11. 25.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등 합계액은 82,277,055원이다.

마.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9.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7. 12. 28.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07404호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각 대출금 청구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해 피고 C은, 피고 A과 피고 B은 2018. 5. 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9. 11.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 을다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할 무렵인 2014. 3. 19.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하여 수차례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 7. 31.경에도 신용정보 조회를 한 적이 있는 사실, 또한 원고는 2016. 8. 9.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 정보에 대하여 조회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 3. 21.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도 수차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1. 26. 이전에 사해행위의 존재 내지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합계 216,029,800원, 소극재산 합계 373,314,66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부동산	가액 (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60,200,00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97,854,00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57,246,000
경남 함안군 D	729,800
합계	216,029,800

<소극재산>

채권자	채무 (원)
신용보증기금	86,330,000
E카드	4,000,000
F은행	18,000,000
G	24,000,000
H은행	22,948,326
원고	78,036,341
피고	140,000,000
합계	373,314,667

따라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C이 그 이전에 피고 B에게 빌려 준 1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원고 등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원금 140,000,000원의 판결금 채권(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3604 대여금 사건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이 2017. 6.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을 받은 것이며,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 B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테니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당시에 피고 B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12. 28. 접수 제 2074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그 원상회복을 따로 구하고 있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1. 울산광역시 울주군 I
 대 301m²
2. 울산광역시 울주군 J
 도로 1041m²
3. 울산광역시 울주군 K
 도로 609m². 끝.